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가단53018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추은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11.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청 2019. 1. 25. 접수 제111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6. 18.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5,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9. 9. 19.경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20. 5. 7. 보험금 22,525,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은 2019. 1. 25.경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8개월 후인 2019. 1. 25.경 대출금 채무의 연체를 시작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로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어 2020. 5. 7.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희현

목 록

자동차등록번호 :

차 명 : BMW 528i

차 대 번 호 :

원 동 기 형 식 : N52B30A

형 식 : FR11

최 종 소 유 자 :

사 용 본 거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